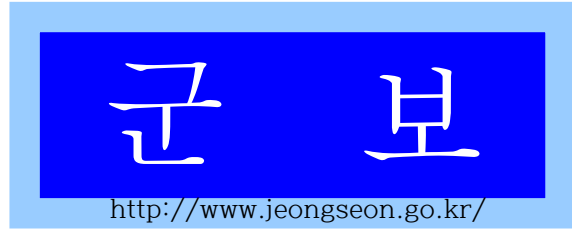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40호 2023. 9. 25. (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972호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1
- 정선군 조례 제2973호 정선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4
- 정선군 조례 제2974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10
- 정선군 조례 제2975호 정선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15
- 정선군 조례 제2976호 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19
- 정선군 조례 제2977호 정선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22
- 정선군 조례 제2978호 정선군 한국 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 운영 조례.....26
- 정선군 조례 제2979호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30
- 정선군 조례 제2980호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34

- 정선군 조례 제2981호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38
- 정선군 조례 제2982호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44
- 정선군 조례 제2983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47
- 정선군 조례 제2984호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50
- 정선군 조례 제2985호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63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8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67
- 정선군 규칙 제1387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76
- 정선군 규칙 제1388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82

조 례

제291회 정선군의회(2023. 9. 7.)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9. 22.)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72호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제2목”을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대한 심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제2목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제2호----- -----.
제4조(특별위원회 설치)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사항의 효율적 심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1. ~ 6. (생 략)	제4조(특별위원회 설치) ----- ----- -----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대한 심사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그 외 근거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근거 조문 수정(안 제2조)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제2목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제2호

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사항 반영(안 제4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대한 심사

제291회 정선군의회(2023. 9. 7.)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8.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73호

정선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소속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정선군 및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

나. 「정선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정선군 및 정선군의회에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2.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보수

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검증·감정비용 등 소송진행 관련 비용으로써 정선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제3조(지원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한다.

1. 고소·고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제4조(지원 범위)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법원의 심급(이하 “심급”이라 한다)마다 2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사개시통보서, 출석요구서, 소장, 판결문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선임비용 지급 증명서류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지방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정선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7조(소송 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은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액만큼의 소송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① 공무원등의 소송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정선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 반환 제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정선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남(), 여()		
	담당업무									
심 급		☐ 기소 전 수사단계		☐ 1심		☐ 2심		☐ 3심		
사건번호		민사		고소·고발			공소			
		법원	접수일	사건번호	경찰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검찰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법원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신청금액		총 계		변호사보수			그 밖의 비용			
		원		원			원			
사건개요										
「정선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①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입증서류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소송비용 관리대장

연번	부서명	지원대상자	사건개요	지원결정일	지원금액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확정일	결과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 보고서		
사 건 명		
당 사 자	원 고	
	피 고	
판 결 결 과		
판 결 이 유		
대 책		
첨 부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 제안이유

우리 군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권익 보호 및 능동적 업무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원 범위(안 제1조 ~ 제4조)

- 1)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
- 2) 전출 및 퇴직공무원(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로 한정)
- 3) 각 심급마다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나. 지원 신청(안 제5조)

-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2) 「한국지방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 우선 신청

다. 지원 결정 및 결과 제출(안 제6조 ~ 제7조)

- 1) 소송심의위원회(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 결정
- 2) 지원을 받은 자는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소송결과보고서 제출

라. 소송비용의 반환(안 제8조)

- 1) 유죄판결의 확정,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 2)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은 경우

제291회 정선군의회(2023. 9. 7.)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8.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74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68명”을 “6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55명”을 “65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3명”을 “16명”으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668명</u>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u>670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655명</u>	1. ----- <u>654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13명</u>	2. ----- <u>16명</u>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5% 이내	26% 이내	30% 이내	25% 이내	12% 이상	1%이내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5% 이내	85%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70	670				
정무직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44	644				
4급	4	3		1		
4급 · 5급	1					1
5급	32	18	2	2	2	8
6급 이하 계	606	606				
전문경력관 계	1	1				
연구직 계	5	5				
연구관						
연구사	5	5				
지도직 계	20	20				
지도관	3			3		
지도사	17	17				

☐ 제안이유

2023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확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 등 추가정원 반영을 통한 국가정책사업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668명 → 670명 (증 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655명 → 654명 (감 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3명 → 16명 (증 3명)

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별표 2)

- 일반직공무원 6급 : 24% 이내 → 26% 이내
- 일반직공무원 9급 : 14% 이상 → 12% 이상

제291회 정선군의회(2023. 9. 7.)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8. 17.)에서 의결된 정선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75호

정선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정선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수가 맡아 처리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제3조의 제목 “(지휘, 감독)”을 “(지휘·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를 “군수”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사무를 지휘·감독”으로, “시정명령등”을 “시정명령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등”을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에게 그 처리 상황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선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정선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읍면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수가 맡아 처리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u>4.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u> <u>5.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u>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의 규정 에 의한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u>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u> 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 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u>시정명령등</u>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읍· <u>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u> <u>등을 보고하도록</u> 할 수 있다.	제3조(지휘, 감독) ①<u>군수</u>----- ----- ----- <u>사무를 지휘·감독</u> ----- ----- ----- <u>시정명령 등</u> --- -----. ②----- ----- <u>인정될 때에는 읍·면장</u> <u>에게 그 처리상황 등</u>----- -----.

☐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에 기여하고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 1)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법 제18조의2 → 제30조)
- 2)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조제1호)
- 3)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조제2호)
- 4)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조제4호)
- 5) 위반자에 대한 조치 삭제(안 제2조제5호)
- 6)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2호)

나. 일본어투 표현 등 정비

제291회 정선군의회(2023. 9. 7.)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8.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76호

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제9조(회계의 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u> - -----.

☐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

나. 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까지 연장

제291회 정선군의회(2023. 9. 7.)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8.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77호

정선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 구성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군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고용형태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고용형태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2.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3.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정선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선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우수기업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나.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사업(안 제8조)
- 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291회 정선군의회(2023. 9. 7.)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8.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한국 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78호

정선군 한국 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선군 지형·지질 자원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 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전시관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탑골길 100 일원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카르스트 지형·지질에 대한 정보제공
2. 전시관 자료의 수집·관리·전시·연구
3. 전시관 시설의 관리 및 개방
4. 전시관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전시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5.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의 관리·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7일 전

까지 조정되는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정선군 및 전시관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5조(입장료) 전시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이용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전시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흡연·음주하거나 음식물을 반입 또는 섭취하는 사람
3.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사람
4. 인화물질·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5. 내·외부 시설 또는 전시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사람
6.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7. 동물(「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한다)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 시설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군수는 전시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시관에 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1. 전시관의 건립과 운영·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
2.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의 운영·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발전에 관한 연구·건의
2. 전시관의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자문
3. 국내외 다른 전시관과의 교류 촉진 및 전시관 홍보
4.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직무

④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관장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관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관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관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8조에 따라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을 받

아 관장을 위촉해야 한다.

⑦ 관장 및 직원의 수당·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 위탁) ①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군수는 전시관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전시관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집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군수는 전시관의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전시관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2. 제1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서무송 박사의 석회암 지형과 동굴 퇴적물 연구자료 기증으로 기증품 영구 보존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정선군 한국 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시관의 명칭과 위치(안 제2조)

나.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안 제3조)

다. 전시관의 운영(안 제4조, 제5조) 및 이용의 제한(안 제6조)

라. 조직 및 인력(안 제7조)

마. 관리 및 운영위탁(안 제8조)

제291회 정선군의회(2023. 9. 7.)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9. 22.)에서 의결된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79호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50퍼센트”를 “70퍼센트”로,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지원범위 및 규모) ① (생략)	제5조(지원범위 및 규모)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시설분담기준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중 <u>50퍼센트</u> 를 세대 및 시설당 최고 <u>150만원</u> 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되는 세대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u>200만원</u> 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세대당 1회에 한한다.	② ----- ----- ----- ----- <u>70퍼센트</u> ----- ----- <u>200만원</u> ----- -- . ----- ----- ----- <u>300만</u> <u>원</u> ----- -----.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신청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세입자가 도시가스 공급 요청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1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현행	개정안
<u>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에 따른 장애인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傷痍者) 3. ~ 5. (생략) 6. <u>사회복지시설</u>(국가·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8. (생략) ② ~ ④ (생략)	<u>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u> 3. ~ 5. (현행과 같음) 6. 「<u>사회복지사업법</u>」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7.·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 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여건 변화 및 물가 상승으로 도시가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비용 부담 완화
- 나.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상이등급 제한을 해제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가. 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안 제5조)
- 1) 가구당 50퍼센트 최고 150만원 ⇒ 70퍼센트 최고 200만원
 - 2)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한액 200만원 ⇒ 300만원
- 나.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대상 근거 법령 명확화(안 제6조)
- 1)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 ⇒ 등급제한 없음
 -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근거 법령 명확화

제291회 정선군의회(2023. 9. 7.)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8.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80호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관리자 예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시설 예약 시스템(숲나들e 포함)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이행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관리자 예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포함)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u> <u>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u> <u>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u> <u>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u> <u>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u> <u>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이행</u>		

현행	개정안
	<u>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 ·</u> <u>해제</u> <u>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u> <u>점검(반기별 1회)</u>

☐ 제안이유

2022년 공공앱 구축·운영실태 감사(감사원)에 따라 공립자연휴양림 예약 담당자가 숲나들e 시스템(외 별도 시스템 포함)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부당 예약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관리자 예약시 사유를 등록하여 내부 승인절차를 받게 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관리자 예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제291회 정선군의회(2023. 9. 7.)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8.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81호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선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및 그 밖의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2. 마을공동 텃밭, 마을 카페, 강의실, 놀이터 등 주민 간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시설
3.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시설
4.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의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선군 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선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요청 및 공감대 형성
3.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③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협의회는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는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시민단체 대표
4.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대표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6.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협의회는 회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는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6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①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관리와 물리적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정선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정선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센터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지원
3.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 지역공동체나 도시재생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 및 소통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에 따른 주거 및 상업지구의 공가(空家), 폐가

(廢家) 및 빈 점포·상가의 신탁 지원 업무

6.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 재생사업 등의 지원
7. 도시재생사업 관련 홍보·교육
8.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의 목적·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주민협의체가 마을조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돌봄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2. 지역 홍보 및 문화 예술 등과 관련한 활동
3. 주민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동 및 마을환경개선 활동
4. 소득,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② 군수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주민협의체, 협의회 또는 센터
2.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조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도시재생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정선군 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센터의 장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안이유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비

나.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위탁 근거 명시

☐ 주요내용

가. 공동이용시설 범위 추가 명시(안 제2조)

1) 변경 전 : 주민 안전, 환경개선 시설

2) 변경 후 : 주민 안전, 주민 협력,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조성된 건축물

나.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관리위탁 근거 마련(안 제12조)

일반입찰 방식, 특수한 경우 수의계약 방식 가능

다.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

공익 목적의 기준 및 시설물 사용료 면제

제291회 정선군의회(2023. 9. 7.)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8.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82호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전단 중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를 “「정선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로 한다.

제10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2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타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9조(전용금지) ----- --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 -----.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준용) ----- ----- 따 른다.
제1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존속기한) ----- ----- 2028년 12월 31일----- -----.

☐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

나.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12.31. 만료됨에 따라 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5년간)까지 연장(안 제12조)

제291회 정선군의회(2023. 9. 7.)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8.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83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8항 단서 중 “입증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을 “신청서 및 입증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⑦ (생략) ⑧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 도사용료를 고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 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 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해당 업무 관계공무 원의 확인으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u>입증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u> ⑨ · ⑩ (생략)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 -- <u>신청서 및 입증서류의 제출 을 생략할</u> ----- ----. ⑨ · ⑩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수도요금 감면 시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통한 신청서 및 입증서류 제출의 생략 규정을 명문화하여 군민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수도요금 감면 시 해당 업무 관계 공무원의 확인 후 신청서 및 입증서류제출 생략(안 제40조제8항)

제291회 정선군의회(2023. 9. 7.)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8.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84호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과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과 소규모급수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해당지역의 군수를”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1에 의하여”를 “별표 1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한 수질검사”를 “따른 수질검사”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를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로,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를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사고에 의하여”를 “사고로 인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예산”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원수확보를 위한 취수원 개발 및 배수탱크 설치

2. 취수원 및 배수탱크 보호시설 등 설치 및 보수
3. 심정의 모터펌프 설치 및 교체
4. 침전지, 여과지, 소독시설, 정수시설 등 설치 및 보수
5. 오염원 유입에 따른 배수탱크 청소 및 사후관리
6. 수도본관 및 노후관 교체

제10조 중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한다.

제13조 앞에 “제3장 관리비용”을 삭제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등) ① 주민이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중 해당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가구가 1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설치에 대하여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제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이나 협의회는 사업 대상 선정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광역상수도 및”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에게 폐지허가를 받아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의 단서조항”을 “제1항의 단서 조항”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의 제목 “(시설의 인가 및 폐지)”를 “(소규모수도시설의 폐지)”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관리비용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관리비용) ①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 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 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 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와 소규모 급수시설-----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생략) 4. “관리자”란 마을상수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지역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5. ~ 6. (생략) ≤신 설≥	제2조(정의) ----- -----. 1. ----- 제3조제9호에 따른 ----- -----. 2. ----- -- 제3조제14호에 따른 ----- -----. 3. (현행과 같음) 4. ----- ----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 -----. 5. ~ 6. (현행과 같음) 7.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

현행	개정안
제3조(정비계획수립) ① <u>정선군수</u> (이하“ <u>군수</u> ”라 한다)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 마다 <u>간이급수시설</u> 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u>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u> <u>말한다.</u> 제3조(정비계획수립) ① <u>군수</u> ----- ----- ----- ---- <u>소규모수도시설</u> ----- -----.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 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u>제7</u> <u>조의</u> <u>규정에</u> <u>의한</u> 점검결과, 지 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 <u>제7</u> <u>조에</u> <u>따른</u> ----- ----- -----.
제4조(시설의 관리) ① (생략)	제4조(시설의 관리) ① (현행과 같 음)
②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 호서식에 <u>의한</u> 대장을 작성, 보 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 ----- <u>따른</u> ----- -----.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 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 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 -----

현행	개정안
알리는 안내판을 <u>별표1에</u> <u>의하여</u> 설치하여야 한다.	----- <u>별표 1에 따라</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수질검사) ① (생략)	제6조(수질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군수는 제1항에 <u>의한</u> 수질검사 결과를 <u>제16조의</u> <u>규정에</u> <u>의한</u>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u>따른 수질검사</u> ----- <u>제16조에 따른</u> ----- -----.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u>의하여</u>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u>의하여</u>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 ----- ----- <u>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u> ----- ----- ----- ----- <u>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u>
②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u>의한</u>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u>따른</u> ----- -----.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u>제6조의</u> <u>규정에</u> <u>의한</u> 수질검사 및 <u>제7조의</u> <u>규정에</u> <u>의한</u>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제8조(개선조치) ----- <u>제6조에 따른</u> ----- <u>제7조에 따른</u> ----- ----- -----

현행	개정안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수·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수·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 -----. 제9조(유지보수) ① ----- ----- 제10조에 따른 ----- 사고로 인해 ----- -----. ----- 단 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 -----. 1. 원수확보를 위한 취수원 개발 및 배수탱크 설치 2. 취수원 및 배수탱크 보호시설 등 설치 및 보수 3. 심정의 모터펌프 설치 및 교체 4. 침전지, 여과지, 소독시설, 정수시설 등 설치 및 보수 5. 오염원 유입에 따른 배수탱크 청소 및 사후관리 6. 수도본관 및 노후관 교체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u>간이급수시설</u> 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세워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 ----- ----- ----- ----- <u>소규모수도시설</u> ----- ----- ----- ---
<u><신 설></u>	제11조(소규모수도시설의 지정 등) ① 주민이 소규모수도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중 해당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가구가 1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 설치에 대하여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제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소규모수도시설 설치 및 개수·보수를 지원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이나 협의회는 사업대상 선정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현행	개정안
제11조(시설의 인가 및 폐지) ① 소규모수도시설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관리대장 2. 시설물 준공도면(설비 및 관망도) 3. 수질검사성적서 ② 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 등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도 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 시설 시설개량 등으로 통폐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제12조(소규모수도시설의 폐지) <u><삭 제></u> ① ----- ----- ----- ----- ----- ----- . 다만, 광역상수도 및 ----- ----- ----- ----- ----- 예외로 한다. ② ----- ----- -----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

현행	개정안
1. (생략)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생략)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요금징수) ①군수는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정선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u>하여야</u> -----.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의 단서 조항----- 3. (현행과 같음) 제13조(건강진단) ----- ----- 제5조에 따라 ----- -----.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4조(관리비용) ① 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 ① (생략)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21조(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	<u>제3장 관리비용</u> 제14조(관리비용) ①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계량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21조(관리의 위탁) ①----- ----- ----- 제16조

현행	개정안
<u>의 규정에 의하여</u>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u>에 따라</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수도법」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포괄적인 조례 조문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10조)

간이급수시설 → 소규모수도시설

나. 소규모급수시설 예산 지원범위 명문화(안 제9조)

- 1) 원수확보를 위한 취수원개발 및 배수탱크 설치
- 2) 취수원 및 배수탱크 보호시설 등 설치 및 보수
- 3) 심정의 모터펌프 설치 및 교체
- 4) 침전지, 여과지, 소독시설, 정수시설의 설치 및 보수
- 5) 오염원 유입에 따른 배수탱크 청소 및 사후관리
- 6) 수도본관 및 노후관 교체

다.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신청 범위 규정(안 제11조)

소규모급수시설 이용가구가 10가구 이상인 경우

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부담범위 규정(안 제14조)

- 1) 관리비용 부담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 다만, 정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2)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마. 마을상수도 요금징수 조문 삭제

제291회 정선군의회(2023. 9. 7.)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8.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85호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정선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회계”를 “정선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9조제1항·제3항”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0호”를 “제1항제3호”로,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를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당해연도 재산세”로 한다.

제6조 중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를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정선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정선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①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 7. (생략) ②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제2조(세입) ① 정선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 ----- ----- 2.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 -----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당해연도 재산세 ----- ----- -----.

현행	개정안
제6조(예탁) 「정선군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예탁) 「정선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 례」 제5조----- -----.
제8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 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회계의 존속기한) ----- ----- 2028년 12월 31일----- -----. ----- ----- -----.

☐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

나.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12.31.만료됨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8조)

-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다. 일본어 투 표현 정비

규 칙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8.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8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계	본청	정선 군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합 계			670	341	16	108	29	84	92
정 무 직			1	1					
일 반 직			644	337	16	86	29	84	92
지 도 직			20			20			
연 구 직			5	3		2			
정 무 직			1	1					
일 반 직	4급	소 계	4	3	0	1	0	0	0
		지방서기관	2	2					
		지방서기관·기술서기관	1	1					
		지방기술서기관	1			1			
	4·5급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1					1	
	5급	소 계	32	18	2	2	2	3	5
		행정	11	8	2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시설	3	3					
		행정·농업	2	2					
		행정·환경	1	1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시설·공업	1				1		
		행정·농업·사회복지·시설	5					3	2
		행정·농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농업·농촌지도관	0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서기관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서기관	1			1			
	6급	소 계	162	91	4	19	8	19	21
		행 정	44	26	4		4	5	5
		세 무	4	4					
		농 업	3	3					
		녹 지	2	2					
		시 설	11	11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계	본청	정선 군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일	7급	환 경	2	2					
		사 회 복 지	0						
		방 송 통 신	1	1					
		행정 · 세무	7	4				2	1
		행정 · 사회복지	16	7				4	5
		행정 · 방재안전	1	1					
		행정 · 농업	5	2					3
		행정 · 녹지	4	4					
		행정 · 전산	3	2				1	
		행정 · 공업	2	2					
		행정 · 보건	2			2			
		보건·식품위생·간호·의약기술	1			1			
		행정 · 환경	3	2					1
		행정 · 시설	9	9					
		농업 · 수의	1	1					
		농업 · 시설	1	1					
		농업 · 시설 · 녹지	4					4	
		시설 · 공업	2				2		
		공업 · 농촌지도사	1			1			
		농업 · 농촌지도사	2	2					
		행정 · 농업 · 녹지	0						
		행정 · 세무 · 농업	1					1	
		행정 · 환경 · 공업	1				1		
		행정 · 환경 · 보건	1	1					
		행정·농업·시설·녹지	5						5
		보건 · 간호 · 의기	8			8			
		보건진료	7			7			
		운전 · 기계운영	3	3					
		사무운영	2					1	1
		사무운영 · 시설관리	1				1		
		시설관리	1					1	
		토목운영	1	1					
일	7급	소 계	191	104	6	25	8	21	27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계	본청	정선 군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일 반 직		시설·토목운영	1	1					
		운전·기계운영	1				1		
		사무운영·시설관리	1	1					
	8급	소 계	157	73	1	28	8	22	25
		행 정	35	20	1		3	6	5
		세 무	3	3					
		사회복지	14	6		1		1	6
		전 산	0						
		공 업	5	3			2		
		농 업	4			1		2	1
		녹 지	3	3					
		보 건	0						
		의료기술	2			2			
		식품위생	1			1			
		간 호	6			4		2	
		환 경	3	2			1		
		시 설	18	11			1	4	2
		전산·방송통신	1	1					
		환경·방재안전	1				1		
		행정·세무	5	1				3	1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전산	2	2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3	2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0						
		행정·시설	9	5					4
		공업·시설	1	1					
		환경·시설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9			9			
		간호·의기	1			1			
		환경·녹지	0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보건진료	1			1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계	본청	정선 군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토목운영	1	1					
		전기운영	1	1					
		시설·전기운영	1	1					
		시설관리	0						
		운 전	11			2		4	5
일 <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계	본청	정선 군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도 직	농촌지도관		3			3			
	농촌지도사		17			17			
연 구 직	연구직 소계		5	3		2			
	학예연구사		2	2					
	기록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2			2			

□ 제안이유

2023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확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 등 추가정원 반영을 통한 국가정책사업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별표)

○ 총 668명 ⇒ 총 670명 (증 2명)

- 2023년 의회 정책지원 인력 정원 반영 : 2명
 - 지방행정주사보 2명
- 부서별 인력 재배치 : 12명 (조정내역 참조)
- 재난관리평가 지표 반영 : 방재안전직렬 직급 복수 추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방재안전사무관
 - 지방행정주사·지방방재안전주사
 - 지방시설서기보·지방방재안전서기보
- 관리운영직 결원 일반직 전환 : 2명
 - 사무운영 7급 → 행정 7급
 - 기계운영 7급 → 운전 7급
- 보건직 및 간호직 단수를 복수로 조정 : 4명(입법예고 의견 일부반영)
 - 보건 7급 감 2명 → 보건·간호 7급 증 2명
 - 간호 7급 감 2명 → 보건·간호 7급 증 2명

나. 부서별 조정내역

정선군의회 (정책지원팀 신설)	기획관 (인구정책)	가족행복과 (도서관운영)	복지과 (경로복지)
증 1명 (지방행정주사) 1	증 1명 (지방행정주사보) 1	증 2명 (지방행정·사서서기보) 2	증 1명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
경제과 (경제정책)	관광과 (관광기획)	문화체육과 (체육진흥)	농업정책과 (농촌활력) ※ 농촌협약 전제이행조건
증 1명 (지방행정·세무서기) 1	증 1명 (지방행정주사보) 1	증 2명 (지방행정주사보) 1 (지방행정서기보) 1	증 2명 (지방행정·공업서기보) 1 (지방농업서기보) 1
환경과 (환경보전)			안전과
증 1명 (지방시설·토목운영서기) 1			감 1명 (지방토목운영서기보) 1
산림과	정선읍	사북읍	신동읍
감 1명 (지방행정주사보) 1	감 1명 (지방행정주사보) 1	감 2명 (지방행정주사보) 1 (지방행정·세무서기) 1	감 2명 (지방행정서기보)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
화암면	남 면	여량면	북평면
감 1명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	감 2명 (지방행정주사보) 1 (지방농업서기보) 1	감 1명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	감 1명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

다. 정원 상계조정 내역

현 행	산림과 지방행정주사보 1명	신동읍·화암면 지방사회복지서기보 2명	북평면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명	안전과 지방토목운영서기보 1명
조 정	정선군의회 지방행정주사 1명	가족행복과 지방행정·사서서기보 2명	농업정책과 지방행정·공업서기보 1명	환경과 지방시설·토목운영서기 1명
현 행	유통축산과 지방안전주사보 1명	농업기술센터 지방행정·농업서기 1명	보건소 지방보건서기보 1명	정선군의회 지방속기서기보 1명
조 정	농업기술센터 지방안전주사보 1명	유통축산과 지방행정·농업서기 1명	보건소 지방보건·환경서기보 1명	정선군의회 지방행정서기 1명
현 행	도시과 지방토목운영주사보 1명	환경과 지방환경·방재 안전서기 1명	세무과 지방사무운영주사보 1명	고한읍 지방기계운영주사보 1명
조 정	환경과 지방시설·전기운영서기 1명	도시과 지방환경·시설서기 1명	세무과 지방행정주사보 1명	고한읍 지방공업·기계운영서기 1명
현 행	보건소 지방보건주사보 2명	보건소 지방간호주사보 2명		
조 정	보건소 지방보건·간호주사보 2명	보건소 지방보건·간호주사보 2명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8.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87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관과 총무행정관”을 “기획담당관과 총무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임명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보좌기관) <u>기획관과 총무행정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u>	제3조(보좌기관) <u>기획담당관과 총무행정담당관</u> ----- -----.
제4조(행정국) ① (생략)	제4조(행정국)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과장은 <u>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u>	② ----- ----- -----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임명한다.

[별표 1]

본청 업무분장표(제6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기획관		(생략)
총무행정관		(생략)
행정국		(생략)
회계과		(생략)
세무과		(생략)
민원과		(생략)
가족행복과		(생략)
복지과		(생략)
경제과		(생략)
안전과	1	안전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회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통제관 : 안전과장)
	3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4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일반사항
	5	안전문화 운동 추진 및 홍보, 안전점검의 날 운영
	6	안전관련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의 및 지원
	7	소방관련 시설 및 의용소방대 지원관리
	8	시설물, 대형사업장 안전관리지도 및 재난 예방
	9	특정관리대상물 조사 및 관리업무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안점점검 및 유지관리
	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수립·시행
	12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안전점검
	13	물놀이 관리지역 지정·관리
	1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15	승강기 관련 업무
	16	긴급구조·구난 관련기관의 협조 및 지원
	17	군민 안전관련 시책·사업 추진(군민 안전보험 지원 등)
	18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19	사회재난 대응·수습 복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0	사회재난 관련 위험시설·지역 지정관리

21	사회재난 관련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의 장·단기 계획 수립
22	사회재난 피해조사 및 원인분석
23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
24	지역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 수립 및 추진
25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및 사회재난 재난지원금 관리
26	재난관련 통신 운영
27	사회재난 상황관리
28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관리
29	재난관련 특별교부세 운용관리
30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31	재난관리평가 추진
32	지역안전지수 관리
33	국가 기반보호체계 업무에 관한 사항
34	재해 대비·대응
35	자연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통제관 : 안전과장)
36	방재시설물 점검 관리
37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
38	수방자재 관리
39	풍수해 보험 및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관리
40	지진대비 업무
41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운영
42	자연재난 상황관리
43	자연재난 지역안전도 진단
44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45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46	중대시민재해재해 예방 계획 수립(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47	정선군 보건 관련 계획 수립(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48	위험성평가(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49	사업장 안전보건순회점검(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50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51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 통계관리(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52	중대시민재해 안전, 보건 관리 업무 의무 이행 안내/점검 및 결과 보고(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5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준비 및 개최(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54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상)
	55	중대산업재해 분야 반기별 점검 및 보고(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56	종사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점검(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57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58	정선군 근로자의 건강관리(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59	산업보건의 위탁,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60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정선군수 경영책임 관리대상)
	61	주민신고망 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2	인력동원 및 자원조사 관리
	63	전시대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정 통제
	64	충무계획 조정·통제
	65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인도에 관한 사항
	66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67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68	통합방위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69	평시 병무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시설국		(생 략)
관광과		(생 략)
문화체육과		(생 략)
전략산업과		(생 략)
농업정책과		(생 략)
유통축산과		(생 략)
환경과		(생 략)
산림과		(생 략)
건설과	1~54	(생 략)
	5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도시과		(생 략)

☐ 제안이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부서 간 업무 조정 내역 및 재난관리 평가 지표 반영 추진

☐ 주요내용

가. [별표 1] 업무분장표 중 안전과 소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건설과로 조정

나. 부군수 보좌기관 직위명 변경(안 제3조)

- 기획관 → 기획담당관
- 총무행정관 → 총무행정담당관

다. 재난관리 평가지표 반영

- 방재안전직 최고급수 복수 정원 책정(안 제4조제2항)
 - 반영정원 : 5급(행정국 안전과장 직위 복수로 조정)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8.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88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급수공사 제공 동의서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준공된 건물의 경우 : 건축물대장

나. 공사 중인 건물의 경우: 건축신고·허가서 사본

② 급수공사의 대상이 신청자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건물 사용승낙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거나 건축신고 또는 허가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공사 접수 및 승인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군수는 건축물의 급수공사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와 합의를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등) (공용급수장치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허가를 급수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관리의무 또는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용급수장치가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전용급수장치로 변경

하거나 공용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용급수장치를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급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로 한다.

② 군수는 상수도 급수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수질사고의 예방 및 수도사용량의 계량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과 교차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관 또는 급수관을 다른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30c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한 급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급수공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보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정선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준공검사) 대행업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비의 산정방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기존 배수본관에서 계량기 설치 구간까지를 산정할 것
2. 동일지역에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 구간과 분리매설된 구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할 것
3. 기존배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 그 비용도 포함하여 산정할 것

② 군수는 제1항의 급수공사비의 산정방법에 따라 자재비, 건설표준품셈,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말 표준공사비를 고시한다. 다만, 비용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 2회 표준공사비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비의 납부) 신청자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납입 통지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부주의로 수도계량기가 파손, 망실 또는 동파된 경우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구입·설치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0조(급수장치의 개전·중지·폐전 신청)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급수장치를 개전·중지·폐전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급수 개전·중지·폐전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과 최종 납입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급수장치 개전·중지·폐전 관리대장에 제1항에 따라 개전·중지·폐전한 급수장치를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수도계량기의 점검) 군수는 조례 제33조에 따른 사용수량의 계량을 위해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 경우 수도사용량 및 사용료 등 수용가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제1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등)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고장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도계량기를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제13조(급수장치의 임시 사용) ①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급수장치를 임시로 설치하여 급수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별표 2에 따른 일반용 누진요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장치의 임시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급수장치의 임시 사용이 종료된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제14조(급수설비의 개량지원 등) ①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선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한정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경우: 50만원 이하(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별 30만원 이하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 30만원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

④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사비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설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입금통장 사본

3. 노후급수관 증명자료(수질검사성적서)

제15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급수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급수시설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서 발주한 유수율 제고 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파손한 사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급수공사 신청서

급수전위치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용 도				전 화 번 호 (H.P)	
건물 현황		건축번호	연월일	설치계량기 (구 경)	m/m
					전
허가	준공			공사 구분	신설, 개조, 증설, 위치변경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 ※ 소규모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사용관로를 상수도급수관로와 교차접속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 ※ 공사비 전부는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고,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본관에서부터 수도계량기 이전 또는 대지경계(담장) 옥외시설 전부를 정선군에 기부채납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준공된 건물의 경우 : 건축물대장
2. 공사 중인 건물의 경우 : 건축신고·허가서 사본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수탁급수공사 제공 동의서

■ 건 명 :
 ■ 일 시 :
 ■ 장 소 :
 ■ 내 용

연 번	내 용	비고	
1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제3항에 의거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며, 향후 본 급수설비를 이용하여 분기 시 별도의 동의없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수용	해당 없음
2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거 급수관 매설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물의 진입로에 매설하되,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유 토지인 경우 공유자 전부의 승낙서를 첨부합니다. ※ 신청인 토지를 포함하여 수도관이 매설되는 모든 토지의 승낙서를 첨부합니다. (미첨부시 급수공사신청 불가)	수용	해당 없음

[급수공사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날인)

연락처 :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급수공사 접수 및 승인대장

[illegible]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협 의 서

- 건 명 :
 ■ 협의일시 :
 ■ 협의장소 :
 ■ 참 석 자(등록부)

소 속	성 명	연 락 처	서 명

■ 협의내용(상호확인)

협 의 내 용	결 정 사 항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준 공 확 인 서			
공 사 위 치			접수번호
성 명		전 화 번 호	
계량기구경		계량기 번호	
도 급 액			
시공지시일	20 년 월 일	착 공 일	20 년 월 일
준공예정일	20 년 월 일	준 공 일	20 년 월 일
준공확인일	20 년 월 일	참 고	사진(전, 중, 후) 첨부

위 공사에 대하여 검사한바 설계내역과 같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함.

- 관부설 심도는 설계내역 이상으로 시공되었음
- 부속품은 규정된 KS자재를 사용되었음
- 공사시행으로 파손된 도로는 원상복구 되었음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수용가(입회자) (인)

시공 회사: (인)

준공확인자: (인)

정 선 군 수 귀하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계량기 대금		계량기 대금		계량기 대금		계량기 대금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설계 수수료		설계 수수료		설계 수수료		설계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관급자재		관급자재		관급자재		관급자재	
순 공사비		순 공사비		순 공사비		순 공사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위의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선군 지방공기업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정선군 지방공기업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정선군 지방공기업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정선군 지방공기업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군 금고 보관용		상하수도사업소(관리)보관용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보관용		수용가 보관용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급수 (개선.중지.폐전) 신청서

수용가 번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비 고			
사 유	건물개조, 건물철거, 기타 ()				
계량기구경	m/m	계 기 번 호		철거지침	m ³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증 사본 2. 최종납입 영수증 사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급수(개선.중지.폐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급수장치 개전·중지·폐전 관리대장

연 번	수용가 번호	지 침	성 명	주 소	연락처	구 경	계기 번호	구 분	철거 일자	개전 일자	비 고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

업 종 별		수용가 번호			
신 청 인		연 락 처			
주 소					
계량기구경	m/m	계량기번호		지침량	
시 험 료	원정				
사 용 량 변 동 사 항					
전월사용량	사 용 료	금월사용량	사 용 료	비 고	

위와 같이 수도사용량이 증감되어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관 인

수도미터

상기 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수도계량기 고장 신고서

업 종 별		수용가 번호			
신 청 인		연 락 처			
주 소					
계량기구경	m/m	계량기번호		지침량	
고 장 내 용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고장신고를 하오니 수리(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관 인

수도미터

상기 물품을 수리(교체)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

[illegible]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부정급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고 위 치				
신 고 내 용				
신 고 자	주 소		연 락 처	
	성 명		계좌번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제4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정급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 제안이유

가.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이행

- 우리 군과 양구군은 수도급수 조례만 있고 시행규칙은 미제정

☐ 주요내용

가. 급수시설의 신청대상(안 제2조제3항)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거나 건축신고 또는 허가가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청

나. 급수공사 범위 규정(안 제4조)

상수도 급수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수질사고의 예방 및 수도사용량의 계량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규모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과 교차접속 제한

다. 급수설비의 개량지원(안 제14조)

- 우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한정

1) 단독주택의 경우 : 50만원 이하

2) 공동주택의 경우 : 각 세대별 30만원 이하

라. 급수설비 개량지원 대상 순위(안 제14조)

1. 사회복지시설

2.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